

# ITU-2000 Working Group 1차 회의 결과 및 향후 방향



이홍림/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선임연구원



유용곤/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통신사무관

ITU 교토전권위원회 (1994 결의 15')와 결의 39')에 의거, ITU의 회원제도, 재정 강화방안, 조직체계 등을 폭넓게 재검토하고 작업결과를 '98년 전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ITU-2000 Working Group 1차 회의가 '96년 10월 24~25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 Working Group은 '96년 6월 개최된 제7차 ITU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번 1차회의에는 Member State ('M' member) 와 Sector member ('m' member) 들로 부터 대표 120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금번회의에서는 본 Working Group에서 검토하여야 할 의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의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개선 기본방향에 대한 토의, 사무국 구성 승인 및 향후 작업일정 계획 등이 다루어졌다. 본고에서는 ITU-2000 Working Group의 설립 배경과 임무, 금번 1차 회의의 주요내용, 그리고 향후 작업일정계획 등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 1. ITU-2000 Working Group 설립배경과 임무

1990년 열렸던 ITU Nice 전권위원회에서는 High Level Committee(HLC)의 설치를 통해 새로운 헌장과 협약을 만들어낸 다수의 권고를 제정했으며, 더불어 HLC는 ITU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일련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ITU활동 참가의 허용범위와 조건에 대한 검토'와 '민간부문 회원('m' member) 참가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남겨지게 되었다. 또한, 1992년 개최된 ITU 추가전권위원회에서는 ITU의 새로운 조직구조를 탄생시켰으나, 재정구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기통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1) ITU Sector의 모든 회원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검토
- 2) ITU의 재정기반 강화
- 3) 본 회의의 한국측 대표로는 정보통신부의 유용곤 통신사무관과 필자가 참석하였다.

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교토 전권위원회에서는 ITU의 재정기반 강화와 함께 각 Sector member들의 권한과 의무를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각각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결의15 및 결의39를 채택하였다.

이중 결의15에 담긴 지시에 따라 19개국 정부 회원(Member State)과 12개 민간부문 회원(Sector member)로 구성된 위원회(Review Committee)가 사무총장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작업결과를 '96년 이사회에 보고서로 제출하였다(Document C96/18). 이와 동시에 결의39에 담긴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보고서가 사무총장에 의해 마련되어 이사회에 보고되었다(Document C96/17). 한편, 이들 두 보고서는 양 사안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관련된 연구를 통합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할 단일 Working Group의 설치를 이사회에 권고하였다.

'96년 7월 개최된 ITU 제7차 이사회에서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ITU의 모든 회원들에게 참여가 개방된 ITU-2000 Working Group을 구성하게 되었다(Council Decision No. 471) 이사회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토 전권위원회의 결의15와 39에 언급된 연구를 다음 사항에 바탕하여 추진한다.
  - 결의15에 관련된 보고서와 결의39에 따른 사무총장 보고서
  - 상기문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 Member(Member State), member(Sector member) 및 각 Sector 자문그룹으로부터의 새로운 기고서
- 본 Working Group은 1997년 ITU이사회에서 검토토록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전권위원회에 보고할 Member 및 member들의 권리와 의무, ITU의 재정기반 강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ITU의 구조개편에 대

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 이와 관련한 ITU현장 및 협약 개정에 관한 초안

## 2. ITU-2000 Working Group 1차 회의 주요 내용

ITU-2000 Working Group 1차회의는 '96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 ITU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본 그룹의 의장으로 내정된 모로코의 Mr.Serrada의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금번회의는 의장에 의해 준비된 작업문서(결의15 및 39관련 권고들에 대한 검토)와 의제관련 6편의 기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금년 6월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ITU전파통신부문의 출판물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분석 보고서'(Document C96/31-E)가 배부되었다.

본 회의는 회의소집 통보 당시에는 작업조직 구성과 향후 작업일정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기 작업문서 및 기고서를 바탕으로 회의 초반부터 ITU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회원제도, 재정구조(및 조직구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 및 논쟁이 이루어졌다. 논의 주제들이 서로간에 관련을 갖는 사안들로 상호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회의시 주요 쟁점사안을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member들로부터의 기부금에 바탕한 Sector별 독립예산 편성

현행 ITU협약(1992,제네바)에 의하면 member(Sector member)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Sector별 비용의 충당을 위해 기부금(Contribution)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ITU 전체의 수입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각 Sector member들이 내는 기부금에 바탕, 해당 Sector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민간부문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참여 및 기

부금 납부를 통해 특히 기술표준의 개발 및 권고 등의 활동에 있어 시장요구를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의 핵심이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각 Sector의 작업방법(의사결정 포함)에 대한 결정을 각 Sector의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나. Sector member(민간부문 회의)의 ITU활동 참여 확대

위 가. 와 밀접한 사안이나, 구체적으로는 ITU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심의에 있어 Sector member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더불어 현재 해당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에 자율적으로 참여(observer 자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Conference와 회의참여 등과 관련하여 member들의 권한을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다. ITU의 재정강화

ITU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에서 언급된 Sector별 독립예산 편성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ITU 출판물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수입성 분석 실시 및 자체 비용충당 제도 강화,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sup>4)</sup>, 기존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과 재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 라. ITU의 Sector간 재조정

현재의 표준화부문, 무선통신부문, 개발부문 및 조정부문(사무국 기능)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특히 표준화부문과 무선통신부문의 연계성과 표준개발 및 권고기능의 강화 필요성에 주목하여 기술표준을 다루는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member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한 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요금, 스펙트럼 관리 등의 비기술적인 권고개발활동은 현행과 같은 회

원제도 및 이와 유사한 권고승인절차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현행 개발부문과 조정부문은 현행 작업방식에 대한 효율화 및 지원대상 부문의 명확화(조정부문)를 꾀하는 측면에서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ITU 변화의 시급성에 대한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쟁점사안별 세부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참가정부 또는 참가 민간부문회원들의 이해와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합의도출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예로 ITU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Sector member의 참여강화와 ITU의 재정기반 강화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특히 현행 Sector간 재조정이나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에 Sector member의 자율적 참여허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간, 정부회원과 민간부문회원간 상당한 이견이 노출되었다. 또한, 가.항의 member들로 부터의 기부금에 바탕한 Sector별 독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개발부문등 민간부문 회원의 입장에서 볼때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부문의 활동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일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한편, 추가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들은 해당 권고의 내용과 함께 의장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ITU-2000 DOC8, 14, Nov., 1996) 이에 대한 회원들로부터의 기고를 받아 2차 회의에서 재차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므로 사안별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본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ITU-2000 Working Group 사무국 구성을 승인하였다. (괄호안은 본 Working Group 부의장 겸 해당그룹 rapporteur)

Group 1: ITU의 재정기반

(Mr. P. Gagne, 프랑스)

4) 예로써 현행의 위성관련 제도 및 주파수 신청 등과 같은 업무에 수혜자 비용 부담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Group 2: 회원제도 (Mr. V. Tour, 러시아)  
 Group 3: (회원의) 권한과 의무  
 (Mr. Lucas, 영국)  
 Group 4: 작업방법 (Mr. G. Fishman, 미국)  
 Group 5: 기대되는 개혁이 전기통신 일반의  
 발전과 특히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Ms. L. Shope-Mafole, 남아프리카공화국)  
 Group 6: 구조개편 및 관련되는 헌장, 협약의  
 개정 (Mr. A. Berrada, 모로코,  
 본 Working Group 의장)

### 3. 향후 작업일정계획

금번 1차 회의에서는 회의결과를 의장보고서 형태로 작성, 회원정부 및 민간회원들에게 발송한 후 '97년 1월 5일까지 재발송,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2차회의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3

차회의는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작업결과보고를 '97년 6월 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금번 1차회의에서는 '97년 이사회에 작업결과 보고가 ITU-2000 Working Group의 작업완료인지 아니면 중간보고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96이사회 결정에 입각하여 '97년 이사회보고로 ITU-2000 Working Group 활동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측의 주장과 본 작업결과가 최종적으로 '98년 전권위원회에 보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때 '97년 이사회보고 이후에도 '98년 전권위원회 이전까지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장을 중심으로한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 경우 전권위원회 이전 '98년 이사회에 최종보고) 이 문제는 2차회의에서 다시 논의, 결정키로 하였다. 